

의안번호	2206408
의 퇴 인	이해식의원
회 답 일	2025. 2. 11.
추계번호	24A5884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0조 (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)	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거나 보조하여야 함(제8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0조 (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의 지원

-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¹⁾에도 불구하고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

1) 제20조(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)

-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(이하 “시설현대화사업”이라 한다)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차장,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·개량·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, 점포 및 상인의 수,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.
1. 상업시설: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, 수리
 2. 공동시설: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, 창고, 상인교육시설, 전기·가스·화재·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·개량·보수 및 관광(테마)거리 등의 조성
 3. 고객편의시설: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, 진입로, 화장실,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·확장 및 수리 등
 - 3의2.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의 설치·확장 및 보수 등
 - 3의3. 홍보시설: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게시시설, 전광판, 방송시설 등의 설치·개량·보수
 4.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
- ②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, 사업별 지원한도, 사업신청을 위한 상인,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비율, 절차 및 사후 관리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용의 전부를 지원하거나 보조하여야 함

- 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는 사업비 조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민간이 부담하는 자비의 규모를 추계하여야 하나 조달 능력이나 지원 사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계획을 확정하기가 어려움
 - 참고로,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이후에 해당 사업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현재는 각 시·도에서 지원하고 있음²⁾

- 이에 개정안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추가 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IV. 작성자

□ 작성자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서영빈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서영빈	02-6788-4653	ybin@assembly.go.kr

2) 지방 이양 이전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(4154-320)사업의 2021년 결산액은 75,219백만원임